

## [시행 2021. 4. 1] [대통령령 제31576호, 2021. 3. 30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 (보육정책과) 044-202-3541

- 1 ( ) 이 영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9. 6. 30.]
- 2 삭제 <2021. 3. 2.>
- **3** 삭제 <2021. 3. 2.>
- 4 삭제 <2021. 3. 2.>
- **4 2** 삭제 <2021. 3. 2.>
- 5 삭제 <2021. 3. 2.>
- 6 ( )①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 정책위원회(이하"중앙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"지방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0. 3. 15., 2012. 6. 29., 2021. 3. 2.〉
-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〈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〉
- 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- 2.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
-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6. 29.〉
- 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
- 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
- 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
- 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- 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**7 (** )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〈개정 2011. 12. 8., 2013. 12. 4.,

2019. 6. 4.>

- 1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

3의2. 삭제<2015. 9. 15.>

- 4.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2. 6. 29., 2013. 12. 4.>
- 1. 삭제<2012. 6. 29.>
- 2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- 6.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- 7. 삭제<2015. 9. 15.>
- 8. 삭제<2012. 6. 29.>
- 9.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 · 벽지 ·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- **8** ( )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각 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- 9 ( )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,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- **10 (** )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 〈개정 2021. 3. 2.〉
-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- **10 2(** • )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 〈개정 2012, 6, 29.〉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-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 > [본조신설 2009. 6. 30.]
- **10 3(** 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[본조신설 2015, 12, 10,]

11 ( 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1. 3. 2.]

12 ( )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3. 12. 4., 2014. 2. 11.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 [제목개정 2013. 12. 4.]

- **13 (** )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각 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 12. 8., 2013. 12. 4., 2019. 6. 4.>
- 1.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
- 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· 교구(敎具)의 제공 또는 대여
- 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· 구직 정보의 제공
- 4. 어린이집 설치 ·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- 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
- 6. 부모에 대한 상담 · 교육
- 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- 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
- 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1, 12, 8, 2013, 12, 4, 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[제목개정 2013, 12, 4.]

- **14 (** )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4., 2017. 6. 20. >
-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-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(常勤)을 원칙으로 한다. 〈개정 2013, 12, 4.〉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[제목개정 2013, 12, 4,]

- 15 ( 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  - 1.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
  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 12. 4. 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- **16** ( 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-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- 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·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[본조신설 2015, 9, 15,]

- **17** 삭제 <2012. 2. 3.>
- **18** 삭제 <2019. 6. 4.>
- **18 2( )** 법 제10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.
- 1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2. 종교단체가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- 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- 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[본조신설 2012. 2. 3.]

**19 (** 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 〉

- 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- 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
- 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- 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 3. 15.〉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- 19 **2(** 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
-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-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
- 2.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택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정원 및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〈개정 2021. 3. 2.〉 [전문개정 2019. 6. 4.]
- **20 (** 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1. 12. 8. 〉
-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8.>
- 1.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(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)
- 2.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1, 12, 8, >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1, 12, 8., 2014, 12, 30.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 [제목개정 2011. 12. 8.]

- **20 2(** )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〈개정 2013. 3. 23., 2014. 12. 30. 〉
  - 1. 교육부
  - 2. 고용노동부
  - 3. 시·도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(이하 "의무이행 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한다. 〈개정 2013, 3, 23., 2014, 2, 11., 2014, 12, 30. 〉

- 1. 교육부장관: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교육공무원법」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(교육부는 제외한다)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
- 2. 고용노동부장관: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
- 3. 시·도지사: 해당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(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)인 사업장
- 4. 보건복지부장관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
-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6. 29.]

- **20 3(** )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사업장의 명칭,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
- 2.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
- 3.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
- 4.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(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)

[본조신설 2012. 6. 29.]

- **20 4(** )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 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2. 30., 2017. 6. 20. >
-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, 주소, 상시근로자 수, 상시 여성근로자 수,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 >

[본조신설 2012, 6, 29,]

- **20 5**( )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- 1.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- 2.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
- 3.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본조신설 2012. 6. 29.]
- 20 6( )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"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.
-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(이하 "명단공표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 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-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 >
-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,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.
-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신설 2015, 12, 10, >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10. >

[본조신설 2012. 6. 29.]

**20 7(** 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,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6. 29.]

- **20 8**( ) ① 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·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- 2.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- 3.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· 시행 조치
- 4.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-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5, 9, 15,]

21 ( )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

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1. 12. 8.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 [제목개정 2011. 12. 8.]

[세국개경 2011, 12, 6,]

- **21 2( )**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"이란 법 제10조
-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. <개정 2011, 12, 8, 2012, 2, 3, 2021, 3, 2, >
-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〈신설 2021. 3. 2.〉
- 1.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: 5명 이상 10명 이하
- 2.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: 11명 이상 15명 이하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[제목개정 2011. 12. 8., 2021. 3. 2.]

**21 3(** )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〈개정 2019. 6. 4.〉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(이하 "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"이라 한다)의 장 또는 직원이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4. 안전, 위생, 보육환경,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- 5.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- 6.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3, 12, 4,]

[제목개정 2019. 6. 4.]

[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<2013. 12. 4. >]

21 4( )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"이란 법 제10조제3호, 제 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 · 단체등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2. 6. 29.]

[제21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<2013. 12. 4. >]

**21 5( 가)**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〉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5. >

[본조신설 2009. 6. 30.]

[제목개정 2011, 12, 8.]

[제21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<2013, 12, 4, >]

**21 6**( )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1.

- 12. 8.>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업에 관한 사항
- 5.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
- 6.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
- 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9.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
- 10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1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12. 내부 규정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3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5.> [본조신설 2009. 6. 30.] [제21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<2013. 12. 4.>]

- 21 7( )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 3. 15.〉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·감독할 수 있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 3. 15. 〉

[본조신설 2009. 6. 30.]

[제21조의6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〈2013. 12. 4.〉]

- 21 8 삭제 <2019. 6. 4.>
- 21 9 삭제 <2019. 6. 4.>
- 21 10 삭제 <2019. 6. 4.>
- **22 (** )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(영유아인 장애아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)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 〈개정 2013. 2. 28., 2013. 3. 23.〉
- 1.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: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·교육과정(이하 "공통과정"이라 한다)을 제공받는 경우. 다만,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.
- 2.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: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(공통과정은 제외한다)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. 〈신설 2013. 2, 28.〉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 2. 28. > [전문개정 2011. 9. 30.]

[제목개정 2013. 2. 28.]

- 23 ( )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. 다만,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. 〈개정 2013. 2. 28., 2016. 12. 30 〉
-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〈개정 2011, 10, 26, 2013, 2, 28, 〉
-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9. 30.]

- 23 **2(** 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양육수당"이라 한다)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,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
  - 가. 사망한 경우
  - 나. 국적을 상실한 경우
  - 다. 「난민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
  - 라. 영유아의 행방불명,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마. 영유아가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. 다만,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바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
- 2.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9. 6. 4.]

- **24** ( )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3. 12. 4.>
- 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 · 개축 및 개수 · 보수 비용
- 2. 보육교사 인건비
- 3. 교재 · 교구비
- 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비
- 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- 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- 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-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〈개정 2010. 3. 15.〉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25 ( )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(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8.〉

[전문개정 2009. 6. 30.] [제목개정 2010. 7. 9.]

25 **2(** • )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익신고"를 "신고 또는 고발"로, "공익침해행위"를 "위법행위"로, "공익신고자"를 "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"으로, "위원회"를 "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-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(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수 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,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·방법, 포상금 지급 방법·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6. 4.]

[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<2019. 6. 4. >]

- **25 3(** )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. <개정 2019. 6. 4., 2019. 10. 29. >
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
- 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, 9, 15,]

[제25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<2019. 6. 4. >]

**25 4(** )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〈개정 2015. 9. 15., 2019. 6. 4.〉 [본조신설 2011. 12. 8.]

[제25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〈2019, 6, 4,〉]

- 25 5( 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 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
  -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12. 8.]

[제25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<2019. 6. 4. >]

- **25 6**( )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5. 9. 15., 2021. 3. 30. >
  - 1.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
  -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
- 3.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
- 4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(이하 "공시정보"라 한다)의 범위 및 공시 횟수·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. <개정 2015. 9. 15., 2019. 6. 4.>

[본조신설 2013, 12, 4,]

[제25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<2019. 6. 4. >]

- **25 7(** 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(이하 "정보공개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. 〈개정 2015. 9. 15.〉
-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. <개정 2015. 9. 15., 2019. 6. 4.>

[본조신설 2013. 12. 4.]

[제25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〈2019. 6. 4.〉]

- **25 8(** )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. 〈개정 2015. 9. 15.〉
-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5, 9, 15, 2019, 6, 4, >
- 1.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
- 2. 위반행위의 내용
- 3. 행정처분의 내용

[본조신설 2013. 12. 4.]

[제25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의8은 제25조의9로 이동 <2019. 6. 4. >]

## **25 9**( ) ① 삭제 〈2015, 9, 15,〉
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·보육교사(이하 "공표대상자"라 한다)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,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〈개정 2015. 9. 15.〉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.〈개정 2015. 9. 15.〉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,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.
- 1.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: 3년
- 2.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(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나 법 제46조 또는 제 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: 해당 운영정지 기간(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)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(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)
- ⑤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문 또는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.
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·도지사는 보건 복지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9. 6. 4.>

[본조신설 2013, 12, 4,]

[제25조의8에서 이동 <2019. 6. 4.>]

- **26** ( 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〈개정 2010. 3.
- 15., 2012. 2. 3., 2012. 6. 29., 2014. 2. 11.>
- 1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
- 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위임한 다. 〈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9. 6. 4. 〉
- 1.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- 2.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- 3.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
- ③ 삭제<2012. 2. 3.>
- ④ 삭제<2012. 2. 3.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[제목개정 2012. 2. 3.]

- **26 2(** 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, 12, 4,〉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- 3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- 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
- 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 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
- 2.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
- 3.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- 4.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·단체 등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,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〈개정 2012. 6. 29., 2015. 9. 15.〉
- 1.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
- 2.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 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 ·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한 경우
- 4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,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-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, 신청서류,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2. 3.]

[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<2012, 2, 3, >]

- 26 3( ) ① 보건복지부장관(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6. 4.〉
- 1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,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
- 6.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
- 7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
- 9.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
- 11.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12.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
- 13.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
- 14.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
- 15.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· 보급 등에 관한 사무
- 16.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
- 17.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
- 18.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
- 19.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
- 20.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
- 21.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
- 22.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
- 23.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 · 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
- 24.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
- 25.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
- 26.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무
- 27.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

- 28.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
- 29.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
- ②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 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〈신설 2015, 9, 15,〉
- 1.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
- ③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9. 15.〉

[전문개정 2014, 12, 30,]

- **26 4(** 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9. 15., 2019. 6. 4.〉
- 1.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: 2015년 1월 1일
- 2.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: 2014년 1월 1일 [전문개정 2014. 12. 30.]
- **27 (** )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4. 22.]

<제18691호, 2005. 1. 29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.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탁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3 (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영 시행당시「고등교육법」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 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(이하 "종전의 법"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 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②이 영 시행당시 「고등교육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4 (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.

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,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.

5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〈제18873호, 2005. 6. 23. 〉(여성가족부 직제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내지 제4조 생략
- 5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<sup>19</sup> 생략
- 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"여성부차관"을 각각 "여성가족부차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· 제2항중 "여성부"를 각각 "여성가족부"로 한다.

제6조제2항, 제12조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동항제5호, 제18조제3항·제4항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, 제22조제4항, 제23조제2항, 제24조제1항제7호·제2항, 제26조제1항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3항 전단, 제27조제2항 전단·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"여성부장관"을 각각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, 제27조제4항,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(3)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"여성부령"을 각각 "여성가족부령"으로 한다.

20 내지35 생략

<제19446호, 2006. 4. 13.>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<제20679호, 2008. 2. 29. >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- 9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④ 까지 생략
-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, 제6조제2항 중 "여성가족부차관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차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"여성가족부"를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"로 한다.

제6조제2항, 제12조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·후단 및 제2항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·후단·제5호·제3항 및 제4항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, 제22조제4항, 제23조제2항,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, 제26조제1항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,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"여성가족부령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 한다.

④ 부터 ⟨80⟩까지 생략

〈제21214호, 2008. 12. 31.〉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5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38>까지 생략

〈139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, 같은 란 제2호 중 "여성가족부장 관"을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보건복지가족부령"을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 한다.

<140>부터 <175>까지 생략

<제21396호. 2009. 3. 31.>

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제21585호, 2009. 6. 30.>

- 1 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공제회의 설립 지원)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,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**3** (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제21765호, 2009. 10. 1. >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및 제3조 생략
- 4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(9) 까지 생략
-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"으로 한다.

- ② 부터③ 까지 생략
- 5 생략

<제21956호, 2009. 12. 31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 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.

〈제22075호, 2010. 3. 15. 〉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08>까지 생략

〈109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가족부차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차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"보건복지가족부"를 각각 "보건복지부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, 제12조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,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, 제21조의4제2항,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,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,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, 제22조제4항, 제23조제 2항,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,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,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, 제21조의6제1항, 별표 1 제1호라목3)·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"보건복지가족부령"을 각각 "보건복지부령"으로 한다.

<110>부터 <187>까지 생략

<제22263호, 2010. 7. 9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22395호, 2010. 9. 20.>(지방세법 시행령)

1 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- 8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엘 까지 생략
-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5호"를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5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9호"를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9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8호"를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8호"를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8호"로 한다.

- 26 부터35 까지 생략
- 9 생략

<제22629호, 2011. 1. 20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22906호, 2011. 4. 22. > (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생략

<제23192호, 2011. 9. 30.>

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제23264호, 2011. 10. 26. >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-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을 "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을 "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⑩부터 ⑮까지 생략

3 생략

<제23356호, 2011. 12. 8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2호 중 "영유아 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바목라)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호의2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다목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)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"영유아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가정보육시설"을 각각 "가정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 11호가목 중 "영유아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· 후단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2 제1호마목 중 "보육시설종사자"를 "보육교직원"으로.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워내용란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"보육시설의 시설장"을 "어린이집의 원장"으로 한다.

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4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⑩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국공립보육시설"을 "국공립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21조제5호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5호라목 중 "영유아 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제2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1 제6호다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2 제42호 중 "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"을 "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"으로 한다.

(16)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0호 중 "국공립보육시설,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"을 "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"으로 한다.

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호 중 "보육시설 · 학원"을 "어린이집 · 학원"으로, "보육시설의 장"을 "어린이집의 원장"으로 한다.

⑨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0. 어린이집계획
-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호가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1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6호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35호 중 "보육시설종사자"를 "보육교직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9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0호 중 "국립·공립 보육시설"을 "국공립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92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6항제2호 중 "보육시설용지"를 "어린이집용지"로 한다.

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제2호 중 "보육시설(이하 "보육시설"이라 한다)"을 "어린이집(이하 "어린이집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, "국공립 보육시설"을 "국공립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, "국공립보육시설"을 "국공립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호다목 중 "보육시설의 종사자"를 "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"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다목2)의 1.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)의 1.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"보육시설의 장"을 각각 "어린이집의 원장"으로 한다.

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제23호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"가정보육시설"을 각각 "가정어린이집"으로, "장기가정보육시설"을 "장기가정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장기가정보육시설"을 "장기가정어린이집"으로, "가정보육시설"을 "가정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제 1호 중 "보육시설인가"를 "어린이집 인가"로 한다.

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4 제3호다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9호가목 중 "영유아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③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9호나목 중 "영유아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36 소음 · 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7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③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영유아보육시설의 장"을 각각 "어린이집의 원장"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③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"을 "국 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6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"보육시설의 장"을 "어린이집의 원장"으로 한다.

4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❸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아목(1) 중 "영유아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(영유아보육시설·아동복지시설·유치원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동관련시설(어린 이집·아동복지시 설·유치원)	의무	의 무	의 무	의 무	의 무	의무	의무	의무	권장										권장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--	--

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전단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, "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"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18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"직장보육시설"을 각각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"국·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"을 "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라.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
-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6항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6의 제목 중 "보육시설용"을 "어린이집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"종전보육시설(이하 "종전보육시설"이라 한다)"을 "종전어린이집(이하 "종전어린이집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종전보육시설"을 "종전어린이집"으로, "신규보육시설(이하 "신규보육시설"이라 한다)"을 "신규어린이집(이하 "신규어린이집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종전보육시설"을 "종전어린이집"으로, "신규보육시설"을 "신규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종전보육시설"을 "종전어

린이집"으로, "신규보육시설"을 각각 "신규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신규보육시설"을 "신규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"종전보육시설"을 각각 "종전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"신규보육시설"을 "신규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94조제1항제3호 중 "직장보육시설"을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"직장보육시설"을 각각 "직장어린이집"으로 한다.

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"가정보육시설"을 "가정어린이집"으로,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, "가정보육시설"을 "가정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가정보육시설"을 "가정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가정보육시설"을 "가정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가정보육시설》을 "가정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》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, "가정보육시설》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"가정보육시설용"을 "가정어린이집용"으로 한다.

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46조제3항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2호. 제4호 및 제5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〈51〉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제20호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〈52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"영유아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〈53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후단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)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"보육시설"을 각각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〈54〉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호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
〈제23488호, 2012. 1. 6.〉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

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
## 2 생략

<제23618호, 2012. 2. 3.>

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〈제23644호, 2012. 2. 29. 〉(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)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···〈생략〉···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- 2 생략
- **3**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<sup>46</sup> 까지 생략
- ④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마목 중 "전임강사"를 "조교수"로 한다.

- 48 부터 <69>까지 생략
- 4 생략

<제23734호, 2012. 4. 17. >(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-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⑨부터⑰ 까지 생략

3 생략

<제23909호, 2012. 6. 29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)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,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3 (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제24247호, 2012. 12. 21. >(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- 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⑩부터⑪ 까지 생략

3 생략

<제24397호. 2013. 2. 28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.

〈제24454호, 2013. 3. 23.〉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- 2 및 제3조 생략
- **4**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② 까지 생략
-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, "교육과학기술부 "를 "교육부"로 한다.

1. 교육부

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24 부터39 까지 생략

<제24904호, 2013. 12. 4.>

- 1 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**2** (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)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.

<제25050호, 2013. 12. 30. >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

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
<제25164호, 2014. 2. 11.>

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〈제25929호, 2014, 12, 30, 〉

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제26525호, 2015. 9. 15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**2** (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제26703호, 2015. 12. 10. >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27252호, 2016. 6. 21. >(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- 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"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부터(6) 까지 생략

<제27732호, 2016. 12. 30.>

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제28132호, 2017. 6. 20.>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 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〈제28628호, 2018. 2. 9.〉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)

1 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

- 16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② 까지 생략
-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"를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"로 한다.

- ② 부터③ 까지 생략
- 17 생략

〈제29180호, 2018. 9. 18. 〉(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)

1 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

- 18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29 까지 생략
-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「공무원연금법」"을 "「공무원연금법」・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"으로 한다.

- ③ 부터④ 까지 생략
- 19 생략

<제29805호, 2019. 6. 4.>

- 1 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,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**2** (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제30171호, 2019. 10. 29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.
-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제31380호, 2021. 1. 5. >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
<제31513호, 2021. 3. 2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제31576호, 2021. 3. 30. 〉(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)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- 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-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"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"를 "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3조"로 한다.

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"「전기사업법」제66조의2"를 "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13조"로 한다.

⑧부터② 까지 생략

3 생략